

기업분할회계

Accounting for Divestitures

박 한 순*

(Park, Han-Soon)

목 차

- I. 서 론
- II. 기업분할의 의의
- III. 기업분할회계
- IV. 결 론

I. 서 론

기업구조조정에 인수·합병(mergers and acquisitions)과 기업분할(divestitures)이 많이 이용되고 있다.¹⁾ 인수·합병이 다각화(diversification)를 위한 전략이라면, 기업분할은 다각화의 반대되는 방법으로서 핵심사업(core business)에 집중하기 위한 전략이다(Cumming and Mallie, 1999, p. 76; Ravenscraft and Scherer, 1991, p. 429).

이 논문은 2002년도 제주대학교 발전기금 국외파견 연구지원계획에 의하여 연구되었습니다.

* 제주대학교 경상대학 회계학과 부교수

- 1) 기업분할은 사업부문축소(downscoping)를 의미하며, 이는 기업규모축소(downsizing)와는 다른 개념이다(Hoskisson et al., 1994, p. 1207). 그리고, 인수·합병을 통틀어 기업결합(business combinations)이라고 한다.

우리나라 상법 및 유럽 국가의 회사법에 규정된 기업분할은 본래 합병에 대칭되는 제도로서, 합병이 둘 이상의 회사의 재산을 하나의 회사에 합치는데 비하여 기업분할은 한 회사의 재산을 적어도 둘 이상의 회사에 나눈다.²⁾ 이에 비하여 미국은 회사법에 기업분할에 관한 규정이 없으며, 일반적으로 자회사에 대한 통제지분(controlling interest)을 처분하여 자회사를 모회사로부터 독립시키는 것을 기업분할로 정의하고 있다(Willens and Philips, 1996, p. 46; Cumming and Mallie, 1999, p. 77). 이러한 기업분할은 기업인수에 대응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기업분할은 법적 측면에 있어서 합병과 공통점이 많은데, 가장 큰 공통점은 재산의 포괄승계 및 그 대가로서 주식의 교부나 사원권의 부여라는 두 가지 점에 있다(권기범, 1996, p. 120).³⁾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분할은 합병과 달리 분할매각(sell-offs), 분할설립(spin-offs), 분할독립(split-offs) 및 완전분할(split-ups), 단순분할과 분할합병, 인적분할과 물적분할 등 용어와 형태가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다.

그런데, 우리나라와 미국의 기업분할에 관한 현행 회계기준은 이러한 경제적 현상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은 기업분할에 관한 별도의 회계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못하며, 다만 APB(Accounting Principles Board)가 1973년에 공표한 Opinion No. 29 비회계성거래에 대한 회계기준이 현재까지 기업분할에 적용되는 회계기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기업분할에 관한 우리나라의 회계기준인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이하 '기준해석'이라 한다) 49-55 역시 미국과 마찬가지로 기업분할의 다양한 형태를 고려한 회계원칙이 되지는 못하고 있다. 그밖에 분할회사와 승계회사의 자본금의 변동문제 및 주식교환비율과 분할비율의 결정은 기업분할에서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개념정의를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업분할의 제 형태와 성격 및 주식교환비율과 분할비율을 자세히 살펴보고, 우리나라와 미국의 기업분할에 관한 현행 회계원칙을 검토한 다음 우리나라 회계원칙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기업분할에 대한 개념정립과 회계기준 개정에 기초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2) 회사의 분할에 관하여, 상법에서는 회사분할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기준해석에서는 기업결합에 대응되는 개념으로서 기업분할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준해석에 따라 기업분할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3) 기업분할은 특정승계의 형식을 취하거나 그 대가가 원칙적으로 사원권이 아니라 금전 기타의 재산인 영업양도, 현물출자, 재산인수 등과 구별된다. 즉 영업양도와 현물출자는 분할(또는 합병)과 유사한 개념이지만, 영업양도는 대가가 사원권이 아닌 재산으로 교부되며, 현물출자는 포괄승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II. 기업분할의 의의

2.1. 우리나라의 기업분할

우리나라의 상법상 기업분할이란 어떤 주식회사가 자신의 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괄이전하여 한 개 또는 수 개의 회사를 설립하거나 한 개 또는 수 개의 존립중의 다른 회사와 합병하는 것을 말한다(손주찬, 2001, p. 492). 여기서 재산이란 사업부문 또는 자산·부채를 의미한다. 전자의 분할을 단순분할, 후자의 분할을 분할합병이라 한다. 보통 기업분할이라 함은 단순분할과 분할합병을 모두 포함하지만, 단순분할만을 일컬어 분할이라 부르기도 한다.⁴⁾

기업분할의 정의에서 보면, 분할하는 회사를 분할회사 또는 양도회사라 하고, 분할회사로부터 재산을 포괄적으로 승계받는 회사를 승계회사, 수혜회사 또는 양수회사라 하며, 분할회사와 승계회사를 통틀어 분할당사회사라 한다.⁵⁾ 본 연구에서는 분할하는 회사를 분할회사, 분할재산을 승계받는 회사를 승계회사로 부르기로 한다. 또한 승계회사를 구분하여, 단순분할에서 분할회사로부터 분할되어 새로이 설립되는 회사를 분할신설회사, 분할합병에서 분할재산을 포괄적으로 승계받는 회사를 합병회사라 한다.⁶⁾

상법상 기업분할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합병여부에 따라 단순분할과 분할합병으로 구분된다. 단순분할이란 분할로 인하여 분할신설회사가 설립되고 분할되는 재산이 분할신설회사에 포괄승계되는 것을 말한다.⁷⁾ 분할합병이란 분할되는 재산이 합병회사에 포괄승계되는 것을 말하는데, 단순분할과 합병의 결합형태라 할 수 있다.⁸⁾ 합병회사가 기존회사이면 흡수분할합병, 신설회사이면 신설분할합병의 형태이다. 그 밖에 둘 이상의 사업부문이 분할되어 단순분할과 분할합병이 함께 이루어지는 형태도 가능하다.⁹⁾

분할회사의 소멸여부에 따라 완전분할(또는 소멸분할)과 불완전분할(또는 존속분할)로 구분된다. 완전분할이란 분할회사가 분할과 동시에 청산하여 소멸되고 재산이 적어도 둘 이상의 회사에 포괄승계되는 형태로서, 승계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은 분할회사 주주에게 지분율대로 배분된

4) 이와 관련하여, 상법과 기준해석에서는 단순분할을 분할이라 칭하고 이를 분할합병과 구분하고 있으나, 유가증권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에서는 분할에 단순분할과 분할합병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5) 그런데, 분할하는 회사의 용어에 대하여 최기원(2001)과 손주찬(2001) 등은 피분할회사로 칭하고 있다.

6) 상법 제53조의6 제1항에서는 이 합병회사를 분할합병의 상대방회사라 정의하고 있다.

7) 상법 530조의2 제1항에 규정된 기업분할

8) 상법 530조의2 제2항에 규정되어 있는 기업분할.

9) 상법 530조의2 제3항에 규정된 기업분할로서, 예를 들면 A, B 두 사업부문을 분할하면서 A 사업부문은 단순분할하고, B사업부문은 분할합병할 수 있다.

다. 불완전분할이란 분할회사가 분할 후에도 존속하는 형태로서, 일부 재산이 하나 이상의 회사에 포괄승계된다.

기업분할로 인하여 발행되는 승계회사 주식의 소유방식에 따라 인적분할과 물적분할로 구분된다.¹⁰⁾

인적분할이란 분할회사가 분할로 인하여 발행되는 승계회사 주식의 총수를 자사주주에게 무상 또는 자사주식과 교환하여 배분하는 형태의 기업분할로서, 분할회사 주주에게 분할의 효력이 미치므로 인적분할이라 한다. 우리나라의 상법상 기업분할제도는 인적분할을 기본형태로 한 것이다. 인적분할은 주식배분방식에 따라 분할회사 주주에게 지분율에 따라 배분하는 비례배분(pro rata distribution)과 분할회사 주주에게 지분율에 관계없이 배분하는 불비례배분(non-pro rata distribution)으로도 구분될 수 있다.

물적분할이란 분할회사가 분할로 인하여 발행되는 승계회사 주식의 총수를 분할회사 자신이 직접 부여받는 형태의 기업분할로서, 재산적 분할에 그치고 분할의 효과가 주주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물적분할은 기본적으로는 인적분할과 다를 것이 없으나, 분할후 승계회사의 주식이 분할회사에 귀속되므로 물적분할에서는 분할회사가 소멸하는 완전분할은 인정되지 않는다(손주찬, 2001, p. 515).¹¹⁾

승계회사가 신설되는지 아니면 기존회사인지의 여부에 따라 신설분할과 흡수분할로 구분된다. 신설분할이란 승계회사가 새로이 설립되는 형태로서, 흡수분할합병을 제외한 기업분할 형태가 포함된다. 흡수분할이란 승계회사가 기존회사인 형태로서, 흡수분할합병만을 의미한다.

2.2 미국의 기업분할

미국에서는 회사법(Uniform Commercial Code)에 특별한 규정이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다양한 형태의 기업분할이 가능하다. 다만 IRC(Internal Revenue Code) Sec. 355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기업분할에 대하여 분할회사와 주주가 얻는 이득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규정을 두어 분할형태에 따라 과세상의 차이만을 두고 있다.¹²⁾ 이러한 비과세 혜택은 비례배분인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주주가 분할회사 주식을 교환하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그리고 재조직계획(a

10) 여기서 주식이란 의결권있는 보통주를 의미한다.

11) 상법에서는 분할회사가 승계회사 주식의 총수를 자사주주에게 배분하거나 직접 취득하는 것만을 기업분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분할회사가 승계회사 주식의 일부분만을 보유하는 분할형태는 상법상 기업분할이 아니다(권기범, 2002, pp. 330-331 및 임대순, 2000, pp. 27-28).

12) 비과세요건에 대해서는 IRC Sec. 355(a)(1)에 규정되어 있으며, 비과세요건중 하나는 통제된 회사(controlled corporation)의 주식을 배분하는 것이다. IRC Sec. 368(c)에 의하면, 통제(control)란 의결권있는 주식의 80% 이상 그리고 다른 종류 주식의 80% 이상을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

plan of reorganization)에 의한 배분인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된다(IRC Sec. 355(a)(2)). 또한 미국의 기업분할은 분할신설회사의 설립여부에 관계없이 모회사(parent company)가 자회사(subsidiary)를 독립된 실체(separate entity)로 분할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Huefner et al., 2000, p. 2-20).¹³⁾ 즉 모회사가 이미 설립되어 있는 자회사의 주식을 주주에게 배분하거나 외부에 매각하는 것을 기업분할로 정의하여, 분할신설회사를 설립하여 동주식을 배분하거나 매각하는 것과 동일하게 처리한다.¹⁴⁾

이에 따라 미국의 기업분할은 인적분할과 물적분할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자회사 주식의 처리 방법에 따라 분할매각, 분할설립, 분할독립, 완전분할, 분할공개 등의 형태로 구분되고 있다(Hoskisson et al., 1994, p. 1207; Gaughan, 1996, p. 365; Cumming and Millie, 1999, p. 77; Weaver, 2000, p. 56).

분할매각(sell-offs, 또는 sale divestitures)이란 분할부문 자산이나 자회사 주식을 현금이나 주식과 교환하여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것을 말한다.

분할설립(spin-offs)이란 자회사 주식 전부를 모회사 주주에게 무상으로 지분율에 따라 비례 배분하는 형태를 말한다. 분할설립이 이루어지면 자회사는 모회사 주주에 의하여 지배되고 모회사와는 지배종속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독립된 실체로 존재하게 된다(Frank and Harden, 2001, p. 506).

분할독립(split-offs)이란 자회사 주식을 모회사 주주 전부 또는 일부에게 동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모회사 주식과 교환하여 배분하는 것을 말한다.¹⁵⁾ 모든 주주에게 비례배분하거나 일부 주주에게만 불비례배분하는 형태가 모두 가능하다. 분할독립이 이루어지면 분할설립과 마찬가지로 자회사는 모회사 주주에 의하여 지배되고 모회사와는 지배종속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독립된 회사로 존재하며, 모회사 주주는 모회사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므로 모회사와 자회사와의 관계는 분할설립보다 독립적이다.

완전분할(split-ups)이란 모회사가 일회 또는 수회의 분할독립을 수행하여 두 개 이상의 독립된 회사를 설립한 후에 청산하여 소멸하는 것을 말한다. 모회사 주주는 소유하고 있는 모회사의 주식을 기업분할로 독립된 회사의 주식과 교환한다(Arnett, 1980, p. 9). 일반적으로는 소유주식수에 대하여 비례기준으로 교환하며, 매우 드물게 불비례기준으로 교환하기도 한다.

13) 일반적으로 모회사가 어떤 회사 지분을 50% 초과하여 보유할 때 어떤 회사를 자회사라 일컫는다. 그러나, 비과세혜택을 얻기 위해서는 모회사가 분할전 자회사 지분을 거의 대부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14) 합병에 대응되는 기업분할의 경우에도, 일차적으로는 분할회사가 분할신설회사를 신설하여 그 주식을 취득한 다음 이차적으로 분할신설회사 주식을 자사 주주에게 배분하거나 외부에 처분하는 것으로 구분하여 본다면 주식을 배분하거나 처분하기 전의 분할신설회사도 자회사에 포함될 수 있다.

15) 우리나라에서는 주주에게 무상으로 비례배분하는 인적분할과 물적분할이 가장 일반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기업분할형태이다

분할공개(equity carve-outs)란 자회사 주식의 일부를 일반투자자에게 공개 매각(initial public offerings)하여 기업공개하는(go public) 것을 말한다. 이는 자회사로서 유지하는 자회사형 분할 공개와 그렇지 않은 매각형 분할공개가 있으며, 모회사는 일반적으로 자회사에 대한 통제지분을 유지하는 자회사형 분할공개를 선택한다(Frank and Harden, 2001, p. 503; Frank, 2001, p. 42).

2.3 기업분할의 성격

인적분할에 있어서, 분할로 인하여 분할회사가 소멸하는 완전분할이나 분할회사의 자본금이 감소하는 분할의 경우에는 분할회사 주주가 소유하고 있던 분할회사 주식과 승계회사 주식간 교환이 이루어지고, 분할회사 자본금의 감소없이 이루어지는 분할의 경우에는 분할회사 주주에게 승계회사 주식이 무상배분된다(최기원, 2001, p. 1196). 즉 우리나라에서도 인적분할시 주식교환방식과 주식의 무상배분방식이 모두 가능하며, 전자는 분할독립(split-offs), 후자는 분할설립(spun-offs)에 해당된다. 기업분할후 분할회사의 청산이 이루어지면 완전분할(split-ups)에 해당된다.

분할설립은 기업분할로 인하여 발행되는 승계회사 주식을 분할회사 주주에게 무상으로 지분율에 따라 비례배분하는 기업분할이므로, 주식배당(stock dividend) 형태의 이익배당 및 투자자본 환급의 성격을 갖는다(Slovin, 1995, p. 91; Maydew et al., 1999, p. 121; Frank, 2001, p. 43). 또한 이러한 기업분할에서는 분할회사 주주가 승계회사 주주로 그대로 유지되므로 기업분할 전과 후의 소유지분(ownership interests)이 실질적으로 동일하다(Arnett, 1980, p. 7; Cumming and Mallie, 1999, p. 88).

분할독립은 기업분할로 인하여 발행되는 승계회사 주식을 분할회사 주주에게 동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분할회사 주식과 교환하여 배분하는 기업분할이므로, 교환취득된 분할회사의 자사 주식은 발행주식의 재취득 또는 자기주식의 취득에 해당되며, 취득 즉시 동 주식을 소각하면 유상감자의 성격을 갖는다(Cumming and Mallie, 1999, p. 92). 주주 전부에게 지분율에 따라 비례배분하면 분할설립처럼 소유지분의 실질적인 변화가 없지만, 불비례배분하면 소유지분의 변화가 오게 된다(Arnett, 1980, p. 8; Cumming and Mallie, 1999, p. 93).¹⁶⁾

16) 주식교환방식의 인적분할에서 불비례배분의 허용문제와 관련하여, 승계회사의 주식을 분할회사의 주주에게 배분함에 있어서 이를 반드시 지분율대로 하도록 강제하는 규정이 없고, 상법 제530조의4 제2항에서 종전의 지분율대로 분할신설회사 주식을 배분하는 때에는 감사인 선임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점, 그리고 주주평등의 원칙 위반도 해당 주주의 동의로 하자가 치유된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주주 전원의 동의를 전제로 불비례배분하는 것이 가능하다(권기범, 2002, p. 347; 김성호, 2001, p. 67).

완전분할은 기업분할로 인하여 발행되는 승계회사 주식을 분할회사 주주에게 동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분할회사 주식과 교환하여 배분한 후 분할회사는 소멸하는 기업분할이므로 잔여재산 분배의 성격을 갖는다. 분할독립과 마찬가지로, 주주 전부에게 지분율에 따라 비례배분하면 소유지분의 실질적인 동일성이 유지되지만 불비례배분하면 소유지분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는다.

물적분할은 기업분할로 인하여 발행되는 승계회사 주식을 분할회사가 직접 소유함으로써 재산의 분할에 그치고 분할의 효과가 주주에게는 미치지 않으므로 현물출자의 성격을 갖는다(손주찬, 2001, p. 498; 최기원, 2001, p. 1173). 그밖에 분할매각과 분할공개는 분할회사가 재산이나 승계회사 주식을 제3자나 일반투자자에게 현금이나 주식과 교환하여 매각하는 것으로서 자산·부채의 처분에 해당된다.

또한 분할·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회사 또는 존속하는 회사에 출자된 재산(순자산)의 가액이 설립된 회사의 자본액 또는 존속하는 회사의 자본증가액 등을 초과하는 금액중에서 분할회사의 이익준비금 기타 법정준비금은 분할·분할합병 후 존속 또는 설립되는 회사가 이를 승계할 수 있다.¹⁷⁾ 그리고 승계되는 이익잉여금에는 임의적립금도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¹⁸⁾

2.4 발행주식수, 분할비율 및 주식교환비율의 결정

발행주식수의 결정에 대하여 상법에 특별한 규정은 없지만, 승계회사의 자본충실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승계회사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이 승계회사가 인수하는 순자산가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발행주식수를 결정한다(김성호, 2003, p. 20). 승계회사가 인수하는 자산과 부채의 평가방법에 대해서도 상법에 별도의 규정이 없다. 다만 상법 제29조 제2항에서 상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한 회계관행에 의한다고 되어 있는 바, 이 규정을 준용하여 승계회사가 인수하는 순자산가액은 우리나라 회계기준에 규정된 회계처리방법을 적용하여 측정한다(임대순 2000, p. 56).

분할비율이란 분할회사 주식 1주당 배분할 승계회사 주식의 비율을 말한다. 기업분할에서의 주식교환비율(stock exchange ratio)이란 주식교환시 적용할 분할회사 주식 1주에 해당하는 승계회사 주식의 상대적 비율을 의미한다. 물적분할에서는 분할회사가 승계회사 주식을 직접 소유하므로 주식의 무상배분이나 주식의 교환을 위한 분할비율과 주식교환비율의 결정이 필요하지 않다. 인적분할의 경우에는 승계회사의 발행주식을 분할회사의 주주에게 배분하기 위하여 분할

17) 상법 제459조 제2항. 여기서 설립되는 회사와 존속하는 회사는 승계회사를 말한다.

18) 최기원(2001) p. 1197, 손주찬(2001) p. 512 참조

비율을 결정한다. 또한 무상배분하는 인적분할(분할설립)에서는 승계회사 주식을 주주에게 배분하기 위하여 분할비율의 결정이 필요하지만 주식교환은 없으므로 주식교환비율은 필요하지 않다. 따라서, 주식교환형태의 인적분할(분할독립과 완전분할)에서만 분할비율과 주식교환비율의 결정이 모두 필요하다.

분할회사 주주에게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배분한다면, 분할비율은 분할회사의 분할전 발행주식총수 대비 승계회사의 기업분할시 배분주식수의 비율로 계산한다.¹⁹⁾

$$\text{분할비율} = \text{승계회사의 분할시 배분주식수} / \text{분할회사의 분할전 발행주식총수}$$

비례적 주식교환형태의 인적분할에서는 일반적으로 분할회사가 교환취득한 자사주식을 소각하므로, 분할회사의 분할전 발행주식총수 대비 교환취득하여 소각(감자)하는 주식총수를 차감한 발행주식총수의 비율(주식병합비율)에 의하여 분할회사 주식을 병합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begin{aligned} \text{주식병합비율} &= \text{분할회사의 감자후 발행주식총수} / \text{분할회사의 분할전 발행주식총수} \\ &= 1 - \text{감자비율} \end{aligned}$$

주식교환비율은 주당 기업가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그런데 합병시 주당 기업가치 산정방법은 증권거래법 제84조의7에 규정되어 있는 것과 달리, 기업분할시 주식교환비율의 결정을 위한 주당 기업가치 산정방법은 법에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실무적으로는 기업분할로 새로이 발행하는 승계회사 주식의 자본금만큼 분할회사 자본금을 감소시킨다. 만일 양사의 액면가액이 동일하여 새로이 발행하는 승계회사 주식수만큼 분할회사 주식을 소각한다면, 분할회사 주식 1주와 승계회사 주식 1주를 교환한 것이므로 주식교환비율은 1 : 1 인 것이다. 그리고 분할회사의 감소되는 주식수와 승계회사의 발행·배분되는 주식수가 동일하므로 감자비율과 분할비율은 같다.

19) 우리나라에서는 승계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를 배분하여야 하므로 배분주식수와 발행주식수가 일치한다.

Ⅲ. 기업분할회계

3.1 기업분할의 회계처리방법

기업분할의 회계처리에서는 분할회사가 처분할 때 그리고 승계회사가 인수할 때 자산·부채를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자산·부채의 측정방법에는 크게 장부가액법(book value method)과 공정가액법(fair value method)이 존재한다. 기업분할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 회계원칙에 입각하여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첫째, 분할회사가 이전한 순자산가액은 승계회사가 취득한 순자산가액과 일치하도록 회계처리하여, 기업분할형태에 따라 양사 모두 장부가액으로 측정하거나 또는 공정가액으로 측정한다.

둘째, 기업분할을 원칙적으로 공정가액법으로 회계처리하되, 주주의 동일성 및 위험과 효익이 실질적으로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에는 장부가액법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을 허용한다.

그런데, 이러한 회계원칙은 단순분할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이며, 분할합병은 단순분할과는 성격이 다른 경제현상으로서 회계적 측면에서도 양자를 구분하여 파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분할합병을 분할과 합병의 이원적 경제현상으로 파악한다면, 분할회사는 단순분할의 회계처리를 준용하고 합병회사는 인수·합병회계를 준용하여 자산·부채를 측정한다.²⁰⁾ 분할합병을 합병에 초점을 둔 경제현상으로 본다면, 합병회사는 인수·합병회계를 준용하고 분할회사는 합병회사의 측정방법에 일치시킨다.²¹⁾ 분할합병을 모회사의 구조조정에 초점을 둔 경제현상으로 간주한다면, 분할회사는 단순분할 회계처리를 준용하고 합병회사는 분할회사의 측정방법에 일치시킨다.

3.1.1 장부가액법

분할신설회사가 새로이 발행하는 주식을 비례배분하면 분할회사 주주는 분할전 회사에 대한 지분이 분할회사와 분할신설회사로 나누어지지만, 주주의 동일성 및 위험과 효익이 실질적으로 그대로 유지되므로 분할회사는 자산·부채를 장부가액으로 처분하고 분할신설회사는 자산·부채를 장부가액으로 취득하는 회계처리를 한다(이러한 회계처리방법을 이하 “장부가액법”이라 한다).²²⁾ 장부가액법으로 측정하는 인적분할형태의 기업분할은 지분통합기업결합에 대응된다.

20) 이러한 경우에 분할회사와 승계회사가 서로 다른 방법으로 자산·부채를 측정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21) 이러한 경우에 비례배분하는 인적분할형태의 회사분할임에도 불구하고 매수기업결합에 해당하는 경우 분할회사가 공정가액으로 자산·부채를 측정하게 되고, 물적분할형태의 회사분할임에도 불구하고 지분통합기업결합인 경우 분할회사가 장부가액으로 자산·부채를 측정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분할회사는 기업분할에서 처분손익을 인식하지 않는다. 이는 이미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 주식을 모회사 주주에게 배분하는 형태의 기업분할에서도 동일하여, 자회사 주식의 배분시 장부가액으로 처분하는 회계처리를 한다.

분할설립에서 분할회사가 당사 주주에게 분할신설회사 주식을 무상으로 배분하는 것은 이익배당과 투자자본환급으로서, 분할회사는 분할된 부문의 순자산 장부가액 또는 배분된 투자주식의 장부가액만큼 이익잉여금 및 자본잉여금의 순으로 감소시킨다.

분할독립과 완전분할에서 분할회사가 당사 주주로부터 비례기준으로 분할신설회사 주식과 교환하여 자사 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자기주식의 취득에 해당한다. 자기주식의 취득가액은 분할된 부문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측정한다. 만일 분할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 즉시 소각한다면 이는 유상감자로서 자본금의 감소로 처리하며, 자본금 감소액과 분할부문의 순자산 장부가액간 차이를 감자차손익으로 처리한다.²³⁾

3.1.2 공정가액법

인적분할이라 하더라도 불비례배분하면 주주의 동일성 및 위험과 효익이 그대로 유지되지 않으며, 물적분할은 분할회사와 분할신설회사와의 관계에서 현물출자 또는 비화폐성자산의 교환에 해당하므로, 분할·승계되는 순자산을 공정가액으로 측정한다. 따라서, 불비례배분하는 인적분할과 물적분할에서 분할회사는 공정가액으로 자산·부채를 처분하고 분할신설회사는 공정가액으로 자산·부채를 취득하는 회계처리를 한다(이러한 회계처리방법을 이하 “공정가액법”이라 한다). 공정가액법으로 측정하는 형태의 기업분할은 매수기업결합에 대응된다.

분할회사는 순자산의 공정가액과 장부가액간 차이를 처분손익으로 인식한다. 이는 자회사 주식을 모회사 주주에게 배분하는 형태의 기업분할에서도 동일하여, 자회사 주식의 배분시 공정가액으로 처분하는 회계처리를 한다.

분할회사가 당사 주주로부터 불비례기준으로 분할신설회사 주식과 교환하여 자사 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자기주식의 취득에 해당한다. 자기주식의 취득가액은 분할된 부문의 순자산 공정가액으로 측정할 수 있다.²⁴⁾ 만일 분할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 즉시 소각한다면 이는 유상감자로

22) 우리나라 상법에서는 인적분할시 분할된 부문에서 발생한 이익잉여금을 분할신설회사로 승계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주주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인적분할에서는 이익잉여금을 분할신설회사로 승계할 수 있다.

23) 만일 분할신설회사의 자본금만큼 분할회사가 감자한다면, 분할회사의 순자산감소액은 분할신설회사의 순자산취득액과 일치하므로 분할신설회사에서 주식발행초과금(자본금을 초과한 순자산취득액)이 발생할 경우 분할회사에서는 동액만큼 감자차손(감자액을 초과한 순자산감소액)이 발생한다.

24) 자기주식의 취득가액 결정에 대해서, APB Opinion No. 29는 para. 18에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는 반면 기준해석 49-55는 배분방법에 따라 적절하게 회계처리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서 자본금의 감소로 처리하며, 자본금 감소액과 분할부문의 순자산 공정가액간 차이를 감자차손익으로 처리한다. 물적분할에서는 분할회사가 취득한 투자주식(분할신설회사 주식)의 취득원가를 분할된 부문의 순자산 공정가액으로 측정한다.

3.2 미국의 기업분할회계

미국의 기업분할에 관한 기본적인 회계원칙은 APB Opinion No. 29(이하 APB 29라 한다)에 규정되어 있다. 기업분할은 비화폐성자산·부채(주식 포함)를 이전하는 것으로서 비화폐성거래(nonmonetary transaction)에 해당한다. 비화폐성거래는 기업과 다른 실체간 자산·용역·부채를 쌍방이전(reciprocal transfer)하는 교환거래(exchange transaction)와 기업과 주주간 또는 기업과 다른 실체간 자산·용역·부채를 어느 한 방향으로만 이전하는 일방이전(nonreciprocal transfer)으로 구분된다.

APB 29 para. 18에 의하면, 비화폐성거래는 원칙적으로 이전된 자산의 공정가액으로 회계처리하고 자산의 처분에 따른 처분손익을 인식한다. 다만 APB 29 paras. 5 and 23에 의하여, 주주에 대한 비화폐성자산의 일방이전에서 다음에 해당하면 배분된 비화폐성자산의 장부가액으로 회계처리하고 처분손익을 인식하지 않는다.²⁵⁾

첫째 회사청산(corporate liquidation) 또는 사업의 모든 부문이나 중요한 부문을 처분하는 분할설립이나 다른 유사형태의 재조직계획에 의하여 주주에게 비화폐성자산을 배분하는 것.

둘째 기업결합시 발행했던 주식을 회수하거나 취득하기 위하여 이전에 이루어진 기업결합 취소(rescission of a prior business combination) 계획에 따라 주주집단(groups of stockholders)에게 비화폐성자산을 배분하는 것.

여기서 분할독립과 완전분할은 주식이 교환되므로 형식상은 쌍방이전이나, 기업이 교환받는 주식은 자산이 아닌 자기주식이므로 일방이전인 것이다(Arnett, 1980, p. 8).

자회사 주식을 모회사 주주에게 비례배분하는 분할설립, 기타 다른 유사형태의 재조직계획 즉 비례배분하는 분할독립, 비례배분하는 완전분할에서 주주에게 비화폐성자산을 배분하는 것은 APB 29 para. 23에 따라 장부가액법으로 회계처리한다. 이에 따라 모회사가 보유중인 자회사 주식을 주주에게 무상배분하거나 자사주식과 교환배분하면, 투자주식을 장부가액으로 처분하는 회계처리를 하고 처분손익을 인식하지 않는다. 다만 EIFT(Emerging Issues Task Force) Issue 87-17에 의하면, 휴업중인 자회사(nonoperating subsidiary)의 분할설립은 장부가액법이 아닌 공

25) APB 29, para. 5에서는 주주에 대한 일방이전인 비화폐성거래의 예로서 spin-offs, split-offs, split-ups을 제시하고 있다.

정가액법으로 회계처리한다.

다른 형태의 비화폐성자산의 일방이전, 예를 들면 불비례배분하는 분할독립과 불비례배분하는 완전분할은 공정가액법으로 회계처리한다. EIFT Issue 96-4도 불비례배분하는 분할독립을 공정가액으로 회계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APB 29 para. 23에 의하면, 실질적으로 이전에 이루어진 기업결합의 취소에서 주주에게 비화폐성자산을 배분하는 것은 장부가액법으로 회계처리한다. 계약을 원상태(status quo)로 하기 위해서는 이전에 기업결합에 참여했던 주주만이 기업결합의 취소에 참여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불비례배분하더라도 공정가액이 아닌 장부가액으로 회계처리한다(Arnett, 1980, pp. 8-9; Cumming and Mallie, 1999, p. 93).²⁶⁾ 이러한 원칙은 이전에 이루어진 기업결합이 매수형태이든지 아니면 지분통합형태이든지에 관계없이 적용된다(Arnett, 1980, p. 10).

자산이나 주식을 제3자에게 매각(분할매각)하거나 일반에게 공개매각(분할공개)하면 분할회사는 이를 공정가액법으로 회계처리하고, 처분된 자산이나 주식의 공정가액과 장부가액간 차이를 처분손익으로 인식한다.

3.3 우리나라의 기업분할회계

우리나라에서 단순분할시 분할회사와 분할신설회사의 회계처리 및 분할합병시 분할회사와 합병회사의 회계처리는 기준해석 49-55를 적용한다. 특히 분할합병에서 합병회사의 회계처리는 기업인수·합병등에관한회계처리준칙(이하 “인수·합병준칙”이라 한다)을 준용하고 분할회사의 회계처리는 합병회사의 측정방법에 일치시킨다.²⁷⁾ 기업분할에서 장부가액법을 적용하는 요건을 충족하면 분할·취득하는 자산·부채를 분할회사와 승계회사 모두 장부가액으로 측정하고, 그렇지 않으면 양사 모두 공정가액으로 측정한다.

분할신설회사 주식을 분할회사 주주에게 비례배분하는 인적분할형태의 단순분할의 경우, 기업분할로 기업(또는 재산)가치의 변화를 인식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장부가액법으로 회계처리한다.²⁸⁾ 분할신설회사는 분할회사로부터 인수하는 자산·부채를 장부가액으로 측정하고, 분할대가와 분할회사로부터 인수하는 순자산 장부가액간 차이는 주식발행초과금 또는 주식할인발행차금

26) 실무적인 문제로서, 취소는 최소한 이전의 기업결합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1년을 초과한다면 계약의 취소로 보기 어렵다(Arnett, 1980, p. 8).

27) 합병시 합병회사의 회계처리방법에는 매수법(purchase method)과 지분통합법(pooling-of-interests method)이 있다.

28) 다만 분할신설회사가 독립적으로 영위하던 사업부를 인수하지 않거나 신설후 분할전에 영위하던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업분할을 공정가액법으로 회계처리한다(기준해석 49-55, (3-6)).

으로 한다. 분할대가는 발행한 주식의 액면총액으로 측정한다. 분할회사는 분할로 인하여 감소하는 자산·부채를 장부가액으로 측정하고, 분할신설회사 주식을 분할회사 주주에게 배분하면 그 배분방법에 따라 적절하게 회계처리한다.

상기이외의 단순분할은 분할신설회사 입장에서는 새로운 실체의 시작이며 분할회사 입장에서는 자산·부채의 처분이므로 공정가액법으로 회계처리한다.²⁹⁾ 분할회사가 승계회사 주식의 일부분을 주주에게 배분하고 나머지를 보유하는 형태의 기업분할도 상법상 허용되는 기업분할은 아니지만 공정가액법으로 회계처리한다. 분할신설회사는 분할회사로부터 인수하는 자산·부채를 공정가액으로 측정하고, 분할대가와 분할회사로부터 인수하는 순자산 공정가액간 차이는 주식발행초과금 또는 주식할인발행차금으로 한다. 분할대가는 발행한 주식의 액면총액과 기타 분할대가의 공정가액의 합계액으로 측정한다. 분할회사는 분할로 인하여 감소된 자산·부채를 공정가액으로 측정하고 공정가액과 장부가액간 차이를 처분손익으로 인식한다. 분할신설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분할회사가 직접 소유하는 경우에 동 주식의 취득원가는 분할로 인하여 감소된 순자산의 공정가액으로 측정한다.

분할합병에서는 합병회사가 분할회사로부터 인수한 자산·부채를 매수법으로 회계처리하면 분할회사도 물적분할형태의 단순분할과 마찬가지로 공정가액법으로 회계처리하고, 지분통합법으로 회계처리하면 분할회사도 분할신설회사 주식을 분할회사 주주에게 비례배분하는 인적분할형태의 단순분할과 마찬가지로 장부가액법으로 회계처리한다.³⁰⁾

3.4 우리나라 기업분할회계의 개선방안

이상의 내용을 토대로 하여 우리나라 기업분할회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의 기업분할회계는 다양한 기업분할형태에 대한 개념정의와 각 형태별 성격 및 이를 고려한 회계처리 규정이 미흡하다. 특히 분할설립형태의 기업분할에 대한 회계처리 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이미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 주식의 배분은 상법상 기업분할은 아니지만 발생가능한 경제현상으로서 이에 대한 회계처리 규정이 필요하며, 또한 이전에 이루어진 기업결합의 취소와 관련된 기업분할에 대한 회계처리 규정도 필요하다.

셋째, 상법상 이익잉여금 승계가 허용되고 있으므로 기업분할을 장부가액법으로 측정할 때 분할된 사업부문의 이익잉여금 승계와 관련된 규정이 제시되어야 한다.

29) 기준해석 49-55 (3-2)에서는 물적분할을 현물출자로 간주한다.

30) 지분통합법의 적용요건에 대해서는 인수·합병준칙 “5. 지분통합 기업결합”을 참조.

넷째, 분할합병에서 분할회사가 합병회사의 회계처리를 따를 경우 지분통합법은 적용이 엄격히 제한되어 있으므로 비례배분하는 인적분할형태의 분할합병을 장부가액법으로 회계처리할 가능성이 매우 적다. 또한 분할합병은 합병회사보다는 분할회사의 구조조정에 초점을 둔 경제현상으로 파악하여 회계처리방법을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분할합병에서 분할회사는 단순분할 회계처리를 준용하고 합병회사는 분할회사의 자산·부채 측정방법과 일치시키도록 한다.

IV. 결 론

많은 회사들은 구조조정을 위하여 인수·합병을 이용하여 사업부문을 확장하기도 하고 기업분할을 이용하여 더 이상 전략목표에 맞지 않는 비핵심사업을 처분하고 핵심사업에 집중하기도 한다. 기업분할에는 이러한 사업부문의 분할뿐만 아니라 자회사에 대한 통제지분의 처분도 포함된다. 우리나라 상법 및 유럽의 회사법에 규정된 기업분할은 합병에 대칭되는 제도로써 전자의 기업분할을 의미하며, 미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기업분할은 기업인수에 대응되는 개념으로서 후자의 기업분할을 의미한다. 후자의 기업분할에는 분할설립(spin-offs), 분할독립(split-offs), 완전분할(split-ups) 등이 포함된다.

본 연구에서는 기업분할의 형태를 확인하고, 각 형태별 성격을 살펴본 다음, 우리나라와 미국의 현행 회계원칙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업분할에 관한 우리나라 회계원칙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의 기업분할회계는 다양한 기업분할형태에 대한 개념정의와 각 형태별 성격을 고려한 회계처리 규정이 미흡하다. 특히 분할설립형태의 기업분할 및 이미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 주식의 배분과 관련된 회계처리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리고, 분할합병은 분할회사의 구조조정에 초점을 둔 경제현상으로 파악하여 회계처리방법을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따라서 분할합병에서 분할회사는 단순분할 회계처리를 준용하고 합병회사는 분할회사의 자산·부채 측정방법에 일치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참고문헌

- 증권선물위원회. 1999.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 49-55 “분할·분할합병에 관한 회계처리”
- 권기범. 2002. 기업구조조정법. 삼지원.
- 권기범. 1996. 회사의 분할에 대하여. 상장협(제34호): 119-133.
- 김성호. 2001. 상법상 회사분할제도의 문제점. 상사법연구(제20권): 51-75.
- 김성호. 2003. 상법상 회사분할과 계산. 상사법연구(제21권): 9-37.
- 손주찬. 2001. 상법. 제11판. 박영사.
- 옥무석. 1997. 기업분할과 시행상의 장애요인. 경영과세무: 98-107.
- 임대순. 2000. 회사분할과 세무. 한국세정신문사.
- 최기원. 2001. 상법학신론. 제13판. 박영사.
- Accounting Principles Board. 1973. Opinion 29 "Accounting for Nonmonetary transactions."
- Arnett, H. E. 1980. APB Opinion No. 29 Applied: Case Studies in Liquidation, Reorganization, and Rescission. *Mergers & Acquisitions* (Fall): 5-14.
- Cumming, J. and T. Mallie. 1999. Accounting for Divestitures: A Comparison of Sell-Offs, Spin-Offs, Split-Offs, And Split-Ups. *Issues in Accounting Education* 14: 75-97.
- Cusatis, P. J. Miles and J. Woolridge. 1993. Restructuring through Spinoffs: The Stock Market Evidence.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33: 291-311.
- EITF Issue No. 87-17. 1987. Spinoffs or Other Distributions of Loans Receivable to Shareholders.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 Board(FASB).
- EITF Issue No. 96-4. 1996. Accounting for Reorganizations Involving a Non-Pro Rata Split-Off of Certain Nonmonetary Assets to Owners. FASB.
- Frank, K. and J. Harden. 2001. Corporate Restructurings: A Comparison of Equity Carve-outs and Spin-offs. *Journal of Business Finance and Accounting* 28: 503-529.
- Frank, K. 2001. Making Sense of Spin-Offs, Tracking Stocks, and Equity Carve-outs. *Strategic Finance*(Dec.): 39-43.
- Gaughan, P. A. 1996. *Mergers, Acquisitions, and Corporate Restructuring*, John Willy and Sons, Inc.
- Hoskisson, R., R. Johnson and D. Moesel. 1994. Corporate Divestiture Intensity in Restructuring Firms: Effects of Governance, Strategy, and Performance.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37: 1207-1251.

- Hudspeth, T. and M. Kliegman. 1996. The Intricate Rules for Crafting a Spin-Off. *Mergers & Acquisitions* (May/June): 47-52.
- Huefner, R., J. Largay III and S. Halem. 2000. *Advanced Financial Accounting*. Dame, A Division of Thomson Learning.
- Kelly, S. T. 2002. Corporate Divestiture Gains as Value-Creator. *Financial Executive* (Dec.): 40-42.
- Klein, A., J. Rosenfeld and W. Beranek, The Two Stages of an Equity Carve-Out and the Price Response of Parent and Subsidiary Stock. *Managerial and Decision Economics* 12: 449-460.
- Maydew, E. L., K. Schipper, and L. Vincent. 1999. The Impact of Taxes on the Choice of Divestiture Method. *Journal of Accounting Economics* 28: 117-150.
- Michaely, R. and W. Shaw. 1995, The Choice of Going Public. *Financial Management* 24: 5-21.
- MLR Enterprises, Inc. 1995. The Pros and Cons of the Split-off. *Mergers & Acquisitions* (Jan/Feb) 12.
- Ravenscraft, D. J. and F. M. Scherer. 1991. Divisional Sell-Off: A Hazard Function Analysis. *Managerial and Decision Economics* 12: 429-438.
- Slovin M. B., M. E. Sushka, and S. R. Ferraro. 1995. A Comparison of the Information Conveyed by Equity Carve-outs, Spin-offs, and Asset Sell-offs.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37: 89-104.
- Weaver, C. D. 2000. Divestiture Structure and Tax Attributes: Evidence from the Omnibus Budget Reconciliation Act of 1993. *The Journal of the American Taxation Association* 22: 54-71.
- Willens, R. and A. Philips. 1996. Investors' Options in Monetizing a Minority Stake. *Mergers & Acquisitions* (May/June): 44-46.